

## 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 통지)

문서번호 건설혁신과-

시행일 2021년 2월 4일

수신 현대엔지니어링(주) 대표자 김창학 귀하

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b>1. 예정된 처분의 제목</b>		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따른 행정처분						
<b>2. 당사자</b>	성명(명칭)	현대엔지니어링(주) 대표자 김창학		토목건축공사업 01-0250				
	주소	서울특별시 중로구 울곡로 75						
<b>3. 처분의 원인된 사실</b>		<p><b>일괄하도급 금지 위반</b></p> <p>공사명 : 「천안연수원 사면보강공사」                  발주자 : 현대자동차(주)                  업체명 : 현대엔지니어링(주)                  하도급사 : (주)에스오씨산업                  도급금액 : 449,900,000원                  하도급액 : 449,900,000원                  위반내용 : 현대엔지니어링(주)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에도 위 공사 전체를 (주)에스오씨산업 하도급 함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-6584호(2019.09.30.)호</p>						
<b>4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</b>		<b>영업정지 또는 과징금</b>						
<b>5.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</b>		<p><b>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</b></p> <p>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(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,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)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(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)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(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)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</p> <p>3.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</p>						
<b>6. 청문 실시</b>		기관명	서울특별시	부서명	건설혁신과(건설업관리팀)	담당자	김문수	
		주소	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, 신청사 3층			전화번호	02)2133-8124	
		일시	2021.02.26(금) 15:00					
		장소	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, 신청사 3층					
		청문 주재자	소속 및 직위, 성명			변호사		
							한민구	

### 서울특별시청

#### <청문시 유의사항>

1. 귀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. 귀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3. 귀사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4. 귀사는 청문 종료 후 행정절차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은 청문 종료 후 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.

5.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